



1986년 NIOSH(미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)에서는 이염화메탄(methylene chloride; CH₂Cl₂)의 직업성 폭로를 가능한 한 낮추고 잠재적인 발암성 물질로 취급할 것을 권고하였다. NIOSH의 이러한 권고는 흰쥐와 생쥐를 통한 동물실험에서 발암원성이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. 이에 따라 OSHA(미산업안전보건위원회)의 Cancer Policy는 이 물질을 잠재적인 직업성 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또한 ACGIH에서도 “작업환경을 위한 허용기준의 근거” 1986년도판(제5판)에 대해 지난 연말에 배포된 교체용 보조판에서는 A₂로 재분류하여 잠재적인 인체 발암물질로 보고 TLV-TWA를 100ppm에서 50ppm으로 낮추었다.

이염화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서 보통 조건의 공기중에서는 화재위험은 없고 300ppm이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. 물에는 잘 녹지 않으나 대부분의 유기용제에 쉽게 녹는 이 물질은 페인트를 지울 때, 플라스틱의 용제, 에어로졸의 추진제, 우레탄포말의 분출제 등으로 쓰인다.

과거 1976년 NIOSH에서는 이염화메탄의 허용농도를 10시간 폭로시의 시간가중 평균 폭로 권고농도(REL)로서 75ppm을 권고하였다. 그 근거로는 이염화메탄의 대사산물인 카복시헤모글로빈(COHb)의 생성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통의

이상이나 전신조직에로의 산소공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있었다. 이염화메탄과 일산화탄소(CO)는 상가작용이 있기 때문에 두 물질이 공존하는 작업장에서는 둘중의 하나 이상의 농도를 계산을 통해 낮출 것을 권고한 바도 있다. 한편 앞서 언급한 과거 1986년도판 ACGIH의 TLV-TWA인 100ppm은 비흡연자가 폭로될 때 혈중 COHb의 농도가 5% 이하가 되도록 근거를 둔 것이며 CO가 공존할 때 그 농도를 더 낮출 것을 권고하기는 마찬가지였다.

미국의 National Toxicology Program(NTP)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염화메탄에 폭로된 흰쥐에서 양성의 유방암(섬유선종)이 유의하게 높은 발생율로 나타났는데 숫컷은 4,000ppm에서 발생빈도가 높아졌는 바 이 물질이 숫컷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유방암의 발암원성이 있고 암컷은 1,000ppm부터 그 빈도가 높아져 암컷에 대하여는 확실한 발암원성의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. 생쥐실험에서는 암수 모두에게 확실히 폐/기관지 종양과 간세포종양의 발생율이 증가된다고 결론을 내렸다. 한편 이염화메탄 폭로 근로자의 작은 코호트를 통한 한 역학연구에서 비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악성췌장암의 발생율이 많았음을 보고하였고 조직에로의 산소공급에 장해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염화메탄 폭로근로자들이 장기폭로되었을 때 초래될 가능성 있는 암발생의 위험과 심장혈관계질환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. 여기에 추가하여 적절한 배기장치, 보호복,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호흡기 보호기구를 비롯하여 이 물질 폭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의학적 모니터링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. 또한 산업보건관리자들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염화메탄 폭로에 따른 증상을 비롯한 중독학적 지식을 완전히 갖춘 것을 말하면서 정기신검을 통하여 이 물질의 목표기관인 호흡기, 심장혈관계, 신경계, 간, 췌장, 혈액, 피부에 특별한 관심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.